**[양식 제67호]** 주식회사 지점설치 등기

|  |  |  |
| --- | --- | --- |
|  | **주식회사 지점설치 등기신청** |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
|  |  |  |  |
| 상 호 |  | 등기번호 |  |
| 본 점 |   |
| 등 기 의 목 적 |  지점설치등기 |
|  등 기 의 사 유 |  |
| 등 기 할 사 항 |
| 지 점 | 명 칭 |   |
| 소재지 |   |
| 설치연월일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면허세 | 금 원 | 지방교육세 | 금 원 | 농어촌특별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등기신청수수료 | 금 원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  |
| 첨 부 서 면 |
| 1.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통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 <기 타> |
|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 알림서비스(선택) |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
| - 신청서 작성요령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은“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 재하며,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1. 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통신사에 제공되고, 동의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등기사무의 접수 및 처리 시까지 그 결과의 알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용지규격 21㎝× 29.7㎝)

|  |  |  |
| --- | --- | --- |
|  | **주식회사 지점설치 등기신청** |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
|  |  |  |  |
| ①상 호 | ○○ 주식회사 | ②등기번호 | ○○○○○○ |
| ③본 점 |  서울특별시 ○○구 ○○로 ○○ |
| ④등 기 의 목 적 |  지점설치등기 |
|  ⑤등 기 의 사 유 | 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
| 등 기 할 사 항 |
| ⑥지 점 | 명 칭 |  △△지점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로 ○○ |
| ⑦설치연월일 |  20○○년○월○일 |
| 기 타 |  |
| ⑧등록면허세 | 금 원 | 지방교육세 | 금 원 | 농어촌특별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등기신청수수료 | 금 원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  |
| ⑨첨 부 서 면 |
| 1.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통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 <기 타> |
| 년 월 일 ⑩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 알림서비스(선택) |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
| - 신청서 작성요령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은“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 재하며,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1. 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통신사에 제공되고, 동의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등기사무의 접수 및 처리 시까지 그 결과의 알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용지규격 21㎝× 29.7㎝)

|  |
| --- |
| **등기신청안내 -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 **(본점 또는 기설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 |

󰁨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본점 또는 기설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이란

주식회사의 지점은 본점과 같이 회사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다만, 지점의 영업에 한함)를 말하며 지점의 설치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지점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까지 정하고 최소행정구역 이외의 장소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 설치일로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점설치등기는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법 등 개정으로 지점등기기록이 사라짐에 따라 지점 설치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을 합니다.

**① 상호, ② 등기번호, ③ 본점**

본점등기부의 상호, 등기번호, 본점소재지를 각 기재합니다.

**④ 등기의 목적**

󰡒지점설치등기󰡓라고 기재합니다.

**⑤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⑥ 지점의 명칭, 소재지**

지점의 명칭을 정한 경우 기재하며 지점소재지는 본점소재지를 정하는 경우와 같이 지번․동․호수까지 특정하여야 합니다.

**⑦ 설치연월일**

지점을 설치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⑧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한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기재합니다.

**⑨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 신청인 등**

법인의 상호와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이사회의사록**

가. 회사의 정관에 지점 설치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상에 지점(소재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지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공증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함). 이때 설치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지점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

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둔 경우 각 이사가(다만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함) 회사를 대표하므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실무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설치장소, 설치일자 등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지점설치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가.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합니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예시】 1.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 부산에 1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는 3건(서울 1건, 대구 1건, 부산 1건)을 납부 2. 주식회사가 수원(중과세 지역임)과 화성(중과세 지역 아님)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 수원의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

주식회사 지점설치등기와 같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출력할 수 있으므로(아래 나. 항의 대도시 권역 내의 지점설치의 경우 제외)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지정되어 있는 대도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임장**

등기신청권자(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인, 위임인,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증, 이사회의사록,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지점을 설치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1.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사록 등 각종 서식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지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법률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상은 주식회사의 지점설치에 대한 등기신청 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서식과 그 내용에 대한 안내인 바, 지점설치와 함께 지배인을 둔 경우, 정관에 지점소재지가 정하여진 경우, 지점설치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 등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재 방식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